

안전한 변화가  
지속가능한 생산을 만듭니다.

# 기계를 이전하거나 개조했다면 안전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이전·개조 후에도 안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  
기계의 종류와 변경내용에 따라 안전검사, 안전인증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.

## 먼저 확인하세요! 우리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인가요?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8조에 따른  
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(주요 예시)



※ 기기의 형상·규격 등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유해·위험기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안전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 (주요 내용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 주기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크레인(이동식 제외), 리프트(이삿짐운반용 제외), 곤돌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마다 |
| 위 기계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             |
| 이동식 크레인, 이삿짐운반용 리프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마다  |
| 프레스, 전단기, 압력용기, 국소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 |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마다 |
| 공정안전보고서(PSM)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후 4년마다                    |

※ 정기검사는 직접 검사부를 기준으로 주기를 관리합니다.  
(최초(신규) 아닌 실제 검사일 기준)

## 기계를 이전했다면?

단순 이전만으로 모든 기계가 즉시 재검사 대상은 아닙니다.  
하지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### 일반적인 이전(예시)

- ✓ 기계 본체 구조 변경 없음
- ✓ 같은 사업장 내 위치 변경
- ✓ 기존 검사 유효기간 내 사용
- ✓ 이전 후 설치상태 점검(필수)

통상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관리  
(단, 설치상태 등 안전성 확인 필요)

### 이런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- ✓ 전원 및 제어계통 변경
- ✓ 기초·고정상태 변경
- ✓ 방호장치 탈착 또는 변경
- ✓ 안전거리 및 작업자 동선 변경
- ✓ 다른 공정에서 구입해 이전(중고기계)

안전검사기관에 확인 후  
필요 시 검사 또는 인증 검토

## 기계를 개조했다면?

모든 개조가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,  
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###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 기계

- ✓ 프레스
- ✓ 전단기 및 절곡기
- ✓ 크레인
- ✓ 리프트
- ✓ 압력용기
- ✓ 롤러기
- ✓ 사출성형기
- ✓ 고소작업대
- ✓ 곤돌라

### 주요 구조부분이 아닌 경우 (예시)

- ✓ 볼트·너트 등 일반 부품 교체
- ✓ 소모품 교환
- ✓ 단순 배관 교체
- ✓ 외관 도장 변경
- ✓ 제어 프로그램 일부 수정  
(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)

변경 내용이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  
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##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다릅니다.

| 안전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사용 중인 기계의 안정성능이<br/>검사기준에 적합한지<br/>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</p> | <p>기계를 제조·수입하거나<br/>설치·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<br/>변경한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</p> |
|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: 시행령 제178조의 유해·위험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: 시행령 제3조의 대상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기: 기계별 2년(또는 4년)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기: 해당 시마다(제조, 수입, 설치, 이전, 구조변경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험: 사용 단계(정기검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험: 제조·수입·설치·이전·구조변경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실무 체크리스트

- ✓ 우리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확인했나요?
- ✓ 기존 검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- ✓ 이전 또는 구조변경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?
- ✓ 변경 후 설치상태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가요?
- ✓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이 없는지 위험성평가도  
함께 검토했나요?

사람이  
안전해야  
기업이 지속됩니다.

월드 : [www.with-safety.co.kr](http://www.with-safety.co.kr)  
전화번호 : 010-9665-0229

SAFETY  
FIRST

“정확한 확인이 불필요한 비용과 사용 지연을 막습니다.



안전한 현장



지속 가능한 생산



함께하는 안전